

	보도자료	
	7.9(목) 10:00부터 보도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,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,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* 과제별 소관 연락처는 [별첨1] 본문에 표기		
책임자	송현도 팀장 (3145-8851)	담당자	정종식 사무관 (3145-8852)
	홍길 팀장 (3145-8855)		장항필 선임 (3145-8856)
	성기철 팀장 (2156-8003)		김민하 사무관 (2156-8007)
	홍영기 부국장 (3145-8202)		최은희 선임 (3145-8635)
배포일	2015. 7. 9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보실(3145-5789~92) 총2매

제 목 : 현장점검반 5.12~5.27 (7~9주차) 건의사항 회신결과

1.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

- 4.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6월말까지 총 12주간 146개 금융 회사를 방문, 1,934건의 건의를 받음

< 1~12주차 접수현황(잠정) >

(단위: 건,%)

건의사항 분류	권역별(건)				합계(비중)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
① 현장조치	155	68	50	127	400(21%)
② 유권해석, 비조치	5	40	33	19	97(5%)
③ 관행·제도개선	215	524	374	324	1,437(74%)
합계	375	632	457	470	1,934(100%)

2. 7~9주차 (5.12~5.27)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

- 7~9주차 건의사항 38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92건, ②법령해석·비조치 의견서 12건 ③관행·제도개선 285건이며, 이중 관행·제도개선 285건은 회신 완료

-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285건중 116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1% 수준 [1~9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7%(1,081건 중 509건) 수준]

(단위: 건,%)

회신결과 분류	권역별(건)				합계(비중)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
① 수용	15	51	27	23	116(41%)
② 불수용	9	36	30	18	93(33%)
③ 추가 검토	5	37	19	15	76(26%)
합계	29	124	76	56	285(100%)

3. 7~9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

□ 관행·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

7~9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
○ [공통] 전산설비 해외위탁시 사전승인 규제 완화
○ [지주] 금융지주내 Two-Bank 상호간 입출금업무 등 위탁허용
○ [은행] 비활성계좌에 대한 비대면 해지 허용
○ [보험]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“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” 제공의무 폐지
○ [보험]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개선
○ [금투]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
○ [금투] NCR 산출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 인하
○ [비은행]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개선
○ [비은행]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신탁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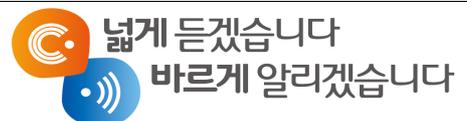
※ 7~9주차 관행·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(<http://better.fsc.go.kr>)에 공개

※ 별첨: 7~9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<별첨> 7~9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

① [공통] 전산설비 해외위탁시 사전승인 규제 완화

[금융위 전자금융과 김동환 과장(2156-9490), 윤덕기 사무관(2156-9491)]

- (건의요지) 외국계 금융회사가 개인정보가 아닌 기업고객정보가 포함된 전산설비를 해외본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위탁업무 추진에 애로* 발생

* 해외본사 등에 대한 전산설비 위탁 관련 승인 대상이 수십건에 달할 수 있고, 통상 사전준비부터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

→ 전산 처리대상 정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고객정보가 포함된 전산설비의 해외 위탁 시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 필요

- (답변요지) 전산설비 위탁 처리절차를 승인에서 사전·사후 보고체계로 완화하고, 보고체계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(15.6월중 규정변경예고*)

* 본건 회신 후 “정보처리 위탁규정” 개정안 규정변경예고(15.6.10)
- 전산설비 위탁승인 폐지, “정보처리 위탁 금감원 보고”로 일원화
- “사후보고”가 원칙, “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” 처리위탁만 사전보고
- 국외위탁시 위탁대상 제한(본점·지점·계열사) 폐지 및 재위탁 허용 등

② [지주] 금융지주내 Two-Bank 상호간 입출금업무 등 위탁허용

[금융위 금융제도팀 김연준 팀장(2156-9680), 김정주 사무관(2156-9682)]

- (건의요지)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르면 자회사등간에는 본질적 업무 위탁이 금지되어, Two Bank 지주회사 체제*하에서도 영업과 무관한 청구행정업무의 교차연계처리가 불가능하여 고객의 불편 가중

* 금융지주회사가 2개의 은행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의미

→ Two Bank 지주회사 체제하에서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 중 통장재발행, 통장이월업무, 입금·지급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은행자회사 상호간 업무위탁을 허용

- (답변요지) 업무위탁을 활용하여 금융지주 내 은행간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(15.6월 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* 후 시행령 개정추진)

* 본건 회신 후 금융위 보도자료 발표(15.6.22 “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”)
- 그룹내 Two Bank의 지점망을 공동활용하여 입금 및 지급서비스, 예금·채무잔액 증명서 발급, 환전 등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교차서비스(위탁) 제공 허용

③ [은행] 비활성화 계좌에 대한 비대면해지 허용

[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영업감독팀 민봉기 팀장(3145-8035), 최동우 선임(3145-8037)]

- (건의요지) 장기간* 거래가 없는 비활성 계좌에 대한 고객의 비대면 해지나 은행의 직권해지 근거가 없어 은행의 관리비용 발생, 고객의 자산운용 기회 상실 및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악용 등 문제 발생

→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통지하면 고객이 비대면으로 해지*하거나, 은행이 직권해지* 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허용할 필요

* 해당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처리

- (답변요지) 금융감독원은 '통장 없는 금융거래'가 일반화 되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한 통장 일괄정리 방안 및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*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동 과제 추진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(~'15.4분기)

* '15.5.28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참조('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' 추진)

④ [보험]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“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” 제공의무 폐지

[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손해보험팀 김상기 팀장(3145-8240), 김동하 선임(3145-8244)]

- (건의요지)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에 의하여 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계약자에게 “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*”를 교부하고 있으나, 그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유사

* 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는 자료

→ 설명자료의 중복제공에 따른 고객혼란 방지 및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“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” 교부의무 폐지

- (답변요지) 보험 상품설명서에서 “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”보다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자의 확인(체크, 서명)을 받고 있으므로,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“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”의 제공의무를 폐지할 예정*

* 소관 기관인 손해보험협회에서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 개정 예정

⑤ [보험]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개선

[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김일태 팀장(3145-7466), 권성훈 수석(3145-7487)]

- **(건의요지)** 외산차는 국산차에 비해 가치감소가 더 빠르게 이루어짐에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상에는 외산차량과 국산차량의 감가상각기준이 동일한 불합리 발생 및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 대한 가액 산출기준이 없어 보험료 산정에 애로

→ 외산차량의 내용연수 조정 및 차량가액이 없는 경우 가액산출 기준 마련 등 차량기준가액표 개선 필요

- **(답변요지)** 보험개발원과 협의하여 외산차량의 내용연수를 조정하고,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 대한 **요율적용방법** 등을 마련할 예정(~15.4분기)

⑥ [금투]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개선

[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건전경영팀 박종수 부국장(3145-7590), 한광중 조사역(3145-7594)]

- **(건의요지)** 증권사*는 자본적정성 보다 수익성이 더 중요한 평가지표임에도 경영실태평가 항목 및 비중이 은행을 참고하여 마련됨에 따라 자본적정성에 더 높은 비중**을 두고 평가

* 자산 대부분이 고객으로부터의 위탁자산임(투자중개업 영위)

** 계량평가항목내 가중치 : 자본적정성 30%, 수익성 20% 등

→ 증권사의 영업특성에 맞게 자본적정성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비중을 높이는 등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항목 등 개선 필요

- **(답변요지)** 증권사 영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(~'15년말)

⑦ NCR 산출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 하향 조정

[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건전경영팀 박종수 부국장(3145-7590), 한소은 조사역(3145-7592)]

- **(건의요지)** NCR 산출시 **증권관계기관(한국예탁결제원, 한국거래소, 한국증권금융)**에 대해 **BBB등급의 금융기관**에 해당하는 **2%의 거래상대방 위험값**을 적용중이나, 위험이 낮은 증권관계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**과도하게 높음**

→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시 **AA- 이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위험값(0.8%) 적용 필요**

- **(답변요지)** 증권관계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른 점이 인정되므로 동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신용위험값 (2%)의 하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(~'15.4분기)

⑧ [비은행]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개선

[금융위 중소기업과 운영은 과장(2156-9865), 박정원 사무관(2156-9856)]

- **(건의요지)** 은행과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다음과 같이 산출됨으로써 **업권간 형평성이 저해**되고, 저축은행은 과도한 유동성규제로 **비율 준수에 애로**발생

<은행> $\frac{\text{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}}{\text{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}} \times 100$	<저축은행> $\frac{\text{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}}{\text{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}} \times 100$
--	--

→ **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출기준**을 은행과 동일하게 **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기준**으로 조정

- **(답변요지)** 최근 저축은행의 **과도한 유동성 보유**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**역마진 발생***이 우려됨에 따라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포함한 **유동성 규제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**** 검토(~'15.4분기)

* 2013회계연도 초과유동성 보유에 따른 손실액 1,172억원(중앙회 추정)

**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 유동성 현황 및 타업권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결정

⑨ [비은행]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
[금융위 중소기업과 운영은 과장(2156-9865), 김기환 사무관(2156-9859)]

- (건의요지) 신협이 동일인 대출시, 자기자본의 20% 규제 외에 거액 동일인 대출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구간별 상한*이 설정되어 있어, 중간규모 신협(자기자본 150억~250억원)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소규모 신협(150억원 이하)에게는 자기자본 확충 유인을 상실케 하는 문제

*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 : 30억원
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 : 50억원

→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신협에 대한 동일인 대출 구간별 상한(30억원) 규제 폐지 필요

- (답변요지) 자기자본 규제(20%)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대출 한도 상한 폐지(16년 2분기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)